'도로 위 시한폭탄' (차량 낙하물, 무보험차량 등) 다쳤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도로 위 시한폭탄'(차량 낙하물, 무보험차량 등) 다쳤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으로 누구든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문의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콜센터와 상담하세요.(1544-0049 연결 후 1번) 자동차 사고··· 정부보장사업 신청대상자는 ?



- 신청대상자
- → 무보험(의무보험 미기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 뺑소니자동차에 의한사고 피해자
- → 도난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기해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떨어진 물체로 인한 사고 피해자 ('221.28 이후에 발생한 사고)

※다만,물적 피해는 비해당

04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피해 입증 서류 제출



신청필수서

- 1지급청구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홈페이지)
- 2개인정보제공 동의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 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경찰서)
- 4진단서(병원발급)
- 5치료비영수증(병원발급)

※기타손해를입증할수있는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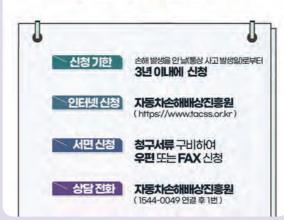
행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

정부보장사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 1항에 따라 정부가보상해 주는 제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05



06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자동치손해배상진흥원에서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먼저 연락하여 안내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교통사고 피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98 | 도로교통 제176호 www.kroad.or.kr | 99